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김용범 의원 외 3인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2. 2. 2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년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과 가정을 일치 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만 4세(매년 1월1일 기준)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4조제1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공무원의 자녀보육과 가정을 일치 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24조제13항에 매년 1월1일 기준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, 2011. 11. 8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한 사례가 있음.
- 자녀 보육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첨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특별휴가 일수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람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“년 7일의 범위에서” 를 “년 5일의 범위에서” 로 하여 특별휴가 신설로 인한 개인별 업무량 편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가일수를 수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안 제24조 제13항 중 “년 7일의 범위에서”를 “년 5일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08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2.

제 출 자 : 권영식 위원외 1인

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“년 7일의 범위에서” 를 “년 5일의 범위에서” 로 하여
특별휴가 신설로 인한 개인별 업무량 편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가일수를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24조 제13항 중 “년 7일의 범위에서”를
“년 5일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4조 제13항 중 “년 7일의 범위에서”를
“년 5일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<u>년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⑫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⑬ ----- ----- -----<u>년 5일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2년 2월 9 일

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3 명

1. 제안이유

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년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과 가정을 일치 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만4세(매년 1월1일 기준)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제1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『지방공무원법』 제77조
- 2)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제7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총무과 의견 별첨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가) 법적근거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
제5조제1호

나) 사 유 :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
없는 경우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⑫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<u>⑬ 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 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7일의 범위 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